

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
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박미영 의원 발의】



2019. 3. 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84호로 2019년 2월 15일 박미영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다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라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2. 14. ~ 2. 19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2014. 1. 28.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토록 하였으며,

-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,
 -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「아동복지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과 「아동복지법」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1.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3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
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소방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
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14. 삭제 <2016. 5. 29.>
15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1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1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8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
1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2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
 2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2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 23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 24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 25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 아동복지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